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2146
------	------

제출일자 : 2021. 10. 7.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서울-경기권역 8개 지자체의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 협약에 따라 안양천의 국가(지방)정원 등록 및 서남권 랜드마크 조성 등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향후 안양천 유역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 1)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구성 및 임원(안 제3조~제4조)

- 1) 협의회는 안양천 서울권역인 금천구청장 · 구로구청장 · 영등포구청장 · 양천구청장과 안양천 경기권역인 광명시장 · 안양시장 · 군포시장 · 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
- 2)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을 둔다.

다. 기능(안 제9조)

-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서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 2)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 3)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4)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라. 회의 및 의결(안 제10~11조)

- 1)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마. 의안 제출(안 제10조)

- 1)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바. 결의사항의 처리(안 제12조)

- 1)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사무처리(안 제14조)

- 1) 협의회 회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 담당 팀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아.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안 제16조)

- 1)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
- 2)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구성
- 3)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 4)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 5)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 통지한다.

자. 재원(안 제17조)

- 1)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 서울-경기 8개 지자체

-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 4) 규제심사 : 해당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6)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붙임**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안 1부
 2. 관계법령 1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향후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등록되도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안양천 유역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안양천 서울권역인 구로구청장 · 영등포구청장 · 양천구청장 · 금천구청장과 안양천 경기권역인 광명시장 · 안양시장 · 군포시장 · 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2년 이내일 경우, 선출된 회장은 임기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하며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 중에서 정기회의 시 다시 선출한다.

제6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7조(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위원 상호 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2021. 5.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 체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 협약서 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에 관한 사항
3. 중앙정부 등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개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

③ 8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안양천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협의안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소속 국·소·원장 이상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결의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위원들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들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리) 협의회 회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 담당 팀장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당년도 논의안건을 감안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관계자를 협의회 주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여 참석 통지한다.

제17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회의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회의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